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2. 26.(금) 배포</p>			
보도일	배포 즉시				
담당과	규제개혁법무담당관	담당자	과장 사무관	오신종 이혜윤	(☎ 044-203-6648) (☎ 044-203-6683)

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◆ 전문대학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·운영 근거 마련
- ◆ 지역인재 육성·지원을 위하여 지방대학 의·약학·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
- ◆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고, 불가피한 합숙훈련 시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보호 조치를 강화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월 26일(금), 제384회 국회(임시회)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·약학·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등 10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.

□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0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[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]

- 고등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한글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비되었다.
- 이번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였다.

【붙임】 참고 2-①

[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일부개정)]

- 이번 일부 개정으로 교육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원인력을 배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,

- 취업전담교사의 활동시간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직업계고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 【붙임】 참고 2-②

[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(일부개정)]

- 이번 개정으로,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가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학교 법인 등이 미이행 할 경우, 관할청(교육부/시도교육감)의 구제명령, 이행강제금, 형사벌 등을 통한 이행 강제가 가능하게 되었고,
-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, 교원의 신분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게 되었다.

【붙임】 참고 2-③

[초·중등교육법(일부개정)]

- 이번 일부 개정으로 학교 노후 시설·설비·교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,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

【붙임】 참고 2-④

[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]

- 이번 개정으로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가 신설되는 한편,
-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이 현행 ‘해당지역 고교 졸업자’에서 ‘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’하고 ‘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’으로 강화되었다. 【붙임】 참고 2-⑤

※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,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

[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]

-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시설의 범위 확대 및 설치·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,
- 학생 안전확보 조치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, 복합시설의

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.

- 이번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는 한편,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【붙임】 참고 2-6

[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]

- 이번 일부 개정으로 국립대학의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,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·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,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대학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, 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어 대학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【붙임】 참고 2-7

[학교체육 진흥법(일부개정)]

-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며,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또한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을 하는 경우,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【붙임】 참고 2-8

[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]

- 이번 일부 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,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'한국사정보화심의회'를 폐지한다. 【붙임】 참고 2-9

[고등교육법 (일부개정)]

-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,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고,

인권센터의 업무범위에 **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**을 포함하고,

-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인권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등을 통해 대학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.
- 또한, **전문대학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**되었으며,
 -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**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.** 【붙임】 참고 2-10

【참고】 1.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

2. 주요 법안별 세부

법안명	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
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	규제개혁법무담당관	과장 오신종(6648), 이해윤 사무관(6683)
직업교육훈련 촉진법	중등직업 교육정책과	과장 김새봄(6398), 이재선 연구사(6863)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	교원정책과	과장 윤소영(6688), 정지은 사무관(6940)
초·중등교육법	교육시설과	과장 정영린(6308), 조준영 사무관(6183)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	지역혁신 대학지원과	과장 이지현(6429), 우연선 사무관(6926)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	교육시설과	과장 정영린(6308), 전수문 사무관(6302)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	국립대학정책과	과장 이강국(6804), 유현희 사무관(6867)
학교체육 진흥법	체육예술교육지원팀	과장 최윤정(6635), 김허중 연구관(6641)
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	학술진흥과	과장 구영실(6604), 이학희 주무관(6879)
고등교육법	대학학사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	과장 안웅환(6249), 박재희 사무관(6254) 과장 정윤경(6411), 지다솔 사무관(6394)



참고 1

2.26.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

순	법률안	주요내용
1	<p>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</p> <p>교육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, '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 예) “~규정에 의하여” → “~에 따라” •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 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 예) “촉탁의사” → “계약의사” •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 정비 예) “요하는” → “필요한” •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쓰 예) “개폐” → “개정 또는 폐지 • 권위적 용어나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 예) “과태료에 처한다” → “과태료를 부과한다”
2	<p>직업교육훈련 촉진법</p> <p>서동용(더) 1672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근거 및 취업지원인력 배치 운영 • 취업전담교사 운영 근거 및 하위법령 위임 등
3	<p>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</p> <p>윤영덕(더) 2937 이수진(더) 5996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원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청에 제출하도록 함 • 처분권자가 소청결과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의 구제명령, 이행강제금, 벌칙 등의 간접강제수단 도입 • 공공단체가 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
4	<p>초·중등교육법</p> <p>조준영(국) 6428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후 시설·설비·교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, 필요한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5	<p>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</p> <p>박완주(더) 255 이정문(더) 269 조승래(더) 851 서동용(더) 1214 강민정(열) 5773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의무화 • 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요건 강화(거주지 요건 및 중학교 졸업 요건 추가) • (적용시기)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

순	법률안	주요내용
6	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박찬대(더) 5010 강득구(더) 559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복합시설 범위 확대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·운영주체를 명확히 하며, 학생 안전확보 및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
7	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윤영석(국) 500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의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기재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·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,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 가능
8	학교체육 진흥법 김예지(국) 5923 안민석(더) 679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되,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이 이를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• 학교의 장은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
9	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김병욱(무) 632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정부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규정에 의해 추진한 행정기관 정비 계획 및 방침에 따라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두는 규정 삭제
10	고등교육법 노웅래(더) 675 권인숙(더) 1695 서영교(더) 4274 박찬대(더) 705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,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를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하여 법률에 규정 •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근거 마련, 인권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•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·운영 근거 마련

참고 2

주요 법안별 세부내용

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-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우리의 한글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비되었다.
-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조 : “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→ “제22조에 따라”
 -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제2항 : “촉탁의사” → “계약의사”
 -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: “요하는” → “필요한”
 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3조제3항, 제57조제3항 : “개폐” → “개정 또는 폐지”
 - 「학교급식법」 제25조제1항 : “과태료에 처한다” → “과태료를 부과한다”
- 동 개정으로 인해
 - 국민이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법치주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
규제개혁법무담당관	과장 오신중(6648), 이해윤 사무관(6683)

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일부개정)


□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일부개정을 통해 직업계고의 취업지원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근거가 마련되고, 직업계고 취업지원인력 배치와 취업전담교사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제7조3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, 교육부장관이 직업계고 취업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또한, 제7조4를 신설하여 시도교육감이 취업전담교사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취업전담교사의 활동시간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아울러, 제7조의5를 신설하여 시도교육감이 취업지원인력을 배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,

-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, 직업계고 학생이 기업에서 안전하게 실습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중등직업교육정책과	과장 김새봄(6398), 이재선 연구사(6863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의3(취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<u>시·도교육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,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<u>(생 략)</u></p> <p>③ <u>취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의3(취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<u>교육부장관 및 시·도 교육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</p> <p>④ <u>시·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</u> ----- -----.</p> <p><u>제7조의4(취업전담교사 지정·운영) ① 시·도교육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,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취업지원 활동시간은</u></p>

3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(일부개정)

☐ 「교원지위법」 일부개정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어 보다 두터운 교원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다.

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「교원지위법」 제10조제3항 등 신설에 따라 교원소청심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,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또한, 처분권자가 결정서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조치하도록 구제명령(제10조의3)을 하여야 하고,
 -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(제10조의4)하고,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(제21조)에 처하도록 한다.

☐ 동 개정으로 인해

-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결정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교원을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처분청의 조치 근거가 마련되었고,
- 이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강화에 따라 보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
교원정책과	과장 윤소영(6688), 정지은 사무관(6940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소청심사 결정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,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<u>당사자</u>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<u>90일</u> 이내에 「행정소송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소청심사 결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(이하 “구제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당사자(공공단체는 제외한다)</u>----- -----<u>30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<u>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.</u></p> <p>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<u>제10조의2(결정의 효력)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.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의3(결정의 효력) 심사위원회 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0조의3(구제명령)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 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 하면,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 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의4(이행강제금) ① 교육부 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3 에 따른 구제명령(이하 이 조에서 “구제명령”이라 한다)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 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 수, 부과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 관,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 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 액산정 기준, 부과·징수된 이 행강제금의 반환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④ <u>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·징수하지 못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⑤ <u>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,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⑥ <u>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(생략)</p> <p>제20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교육감에게</u> 위임할 수 있다</p> <p><신설></p> <p>제21조(과태료) (생략)</p>	<p>제10조의5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(현행 제10조의2와 같음)</p> <p>제20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</u> 위임할 수 있다</p> <p>제21조(벌칙) 제10조제5항에 따라 <u>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</p> <p>제22조(과태료) (현행 제21조와 같음)</p>
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한다.</p>	

4 초·중등교육법(일부개정)

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 노후 시설·설비·교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와 함께 필요한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시설·설비·교구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(제30조의9 제1항 신설)
 -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의 시설·설비·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고,
-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등 조치 의무 (제30조의9 제2항 신설)
 - 점검 결과, 시설·설비·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,
- 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(제30조의9 제3항 신설)
 -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교육시설과	과장 정영린(6308), 조준영 사무관(6183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0조의9(시설·설비·교구의 점검 등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·설비·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·설비·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,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령으로 정한다.</u></p>

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


☐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 된다.

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지역인재 선발 의무화) 「지방대육성법」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기존 권고로 운영되던 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 된다.
 - 또한 제15조제4항을 신설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해당 계열 입학기회를 확대하였다.
- (지역인재 요건 강화) 제15조제2항의 후단과 단서를 신설하여 지역인재 요건을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하였다.
- (지역인재 선발 유인) 제15조제5항을 신설하여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.
- (적용 시기) 동 법률 개정으로 인해 대입전형 준비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, 선발 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☐ 동 개정으로 인해

- 지역인재에 대한 대학 입학기회 확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담당 부서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</td> </tr> <tr> <td>지역혁신대학지원과</td> <td>과장 이지현(6429), 우연선 사무관(6926)</td> </tr> </table>	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	지역혁신대학지원과	과장 이지현(6429), 우연선 사무관(6926)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				
지역혁신대학지원과	과장 이지현(6429), 우연선 사무관(6926)				

현행	개정안
<p>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, 의학전문대학원,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<u>사람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</u>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<u>업예정자를 포함한다)</u></p> <p>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사람</u>----- -----<u>입학</u>----- ----- -----<u>하여야</u>-----.</p> <p>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(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</p> <p>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</p> <p>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</p> <p>4.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</p>

현 행	개 정 안
<p data-bbox="193 286 360 331"><u><신 설></u></p> <p data-bbox="193 667 392 712">④ (생 략)</p>	<p data-bbox="884 241 1449 667">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</u> <u>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</u> <u>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</u>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<u>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/p> <p data-bbox="884 667 1289 712">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847 786 983 824"><부칙></p> <p data-bbox="847 853 1449 949"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data-bbox="847 972 1449 1359">제2조(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15조제2항의 선발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</p>


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

☐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다.

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학교복합시설 시설의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의를 개정하였으며,
- 불분명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여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
- 또한, 학생 안전확보 조치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, 전반적인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☐ 이번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교육시설과	과장 정영린(6308), 전수문 사무관(6302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“학교복합시설”이란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, 생활체육시설,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2. “학교복합시설”이란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·문화체육시설 나.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<p>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09 280 379 320"><신설></p> <p data-bbox="172 622 785 996">제5조(학교복합시설의 설치)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ol data-bbox="209 1032 785 1608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교복합시설의 규모, 용도, 재원,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.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.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.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<p data-bbox="209 1644 379 1684"><신설></p>	<p data-bbox="850 280 1430 589">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 data-bbox="815 622 1430 862">제5조(학교복합시설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----- ---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-- -----.</p> <ol data-bbox="850 1032 1430 1608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(이하 “감독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.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<p data-bbox="850 1644 1430 2085"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 복합시설의 기획,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·개축,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,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,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p>제6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 원칙) 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 원칙)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,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</p>

현행	개정안
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</u>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④ <u>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에</u> 필요한 사항은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</u> 정할 수 있다.</p> <p><u>제8조(학생의 안전 확보)</u> <u><신설></u></p>	<p><u>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·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-----</u> -.</p> <p>⑤ <u>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-----</u> -----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8조(학생의 안전 확보) ① 학교복합시설은 「건축법」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,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제9조(전문기관)</u> <u><신설></u></p>	<p><u>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9조(전문기관)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사·분석, 연구·자문, 운영·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10조(교육경비 보조의 특례)</u> <u><신설></u></p>	<p><u>제10조(교육경비 보조의 특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(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)에게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부칙></u> <u>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


□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처분 수입금을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3항 제10호를 신설하여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에 국유재산 처분수입금을 추가하였고,
- 제26조 제2항, 제3항을 신설하여 대학의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기재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·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,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어 대학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국립대학정책과	과장 이강국(6804), 유현희 사무관(6867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대학회계) ①②(생략)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9. (생략) <신 설> 10. (생략)</p> <p>제26조(재산관리)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,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 <신 설></p>	<p>제11조(대학회계) ①② (생략)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</u> 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<p>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·처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「국가재정법」 제17조,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7조 및 「국유재산법」 제26조의3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.</u></p>
부칙	
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	

8 학교체육 진흥법(일부개정)

□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일부개정을 통해 일정수준의 학력 기준(이하 “최저학력”)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11조제1항을 개정하여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없게 하였다.

- 다만,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또한,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○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학생선수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학업도 병행하게 될 것이다.

○ 또한,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합숙에서도 선수를 위한 안전 및 인권보호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
체육예술교육지원팀	과장 최윤정(6635), 김허중 연구관(664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(이하 “최저학력”이라 한다)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<u>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.</u> <단서 신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·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④ ~ ⑥ (생 략)</p>	<p>제11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</p>

9 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 보급 등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

- 「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 보급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‘한국사정보화심의회’를 폐지한다.
-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,
 - 「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 보급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3항을 삭제하여,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‘한국사정보화심의회’를 폐지한다.
- 동 개정으로 형식화된 정부 위원회를 정비하여,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학술진흥과	과장 구영실(6604), 이학희 주무관(6879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한국사정보화의 촉진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<u>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둔다.</u></p> <p>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19조(한국사정보화의 촉진) ① (현 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④ <u>제1항과 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10 고등교육법(일부개정)

□ 「고등교육법」 일부개정을 통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고,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「고등교육법」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고,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 뿐만 아니라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하고,
 - 국가 및 지자체가 대학의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인권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.
- 「고등교육법」 제49조의2와 제50조의4를 신설하여, 전문대학에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
 -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, 입학 자격, 학위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미래 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체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대학학사제도과	과장 안웅환(6249), 박재희 사무관(6254)
전문대학정책과	과장 정윤경(6411), 지다슬 사무관(639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9조의3(인권센터) ① 학교는 <u>교직원,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
<신 설>	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<u>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,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</u> 2. <u>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</u> 3. <u>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</u> 4. <u>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<신 설>	③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</u>
<신 설>	④ <u>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</u>
<신 설>	제48조(수업연한) <u>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47 689 416 728"><신설></p> <p data-bbox="247 1088 416 1126"><신설></p>	<p data-bbox="850 293 1390 533">1. <u>전문학사학위과정 :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,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50 562 1390 667">2. <u>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: 2년 이상</u></p> <p data-bbox="815 689 1390 1066">제49조의2(전문기술석사과정) <u>고속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15 1088 1390 1529">제50조의4(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) ① <u>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50 1559 1390 1935">② <u>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50 1964 1390 2069">③ <u>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할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인가를 위한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u>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,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